

(주)폴무원 제36기 의안설명서

제1호 의안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6기 재무제표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
 - 영업보고서 참조
-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영업보고서 참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현금배당 : 보통주 주당 102원
우선주 주당 347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289조 및 433조, 434조에 의거하여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당사 정관상 주식매수선택권은 2년 경과한 날로부터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시키기 위해 4년 경과한 날로부터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관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전)	변경(안)
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⑥ 생략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⑥ (좌동)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382조 및 정관 제29조의 2에 의거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의 선임
- 후보 : 김영환 (초임)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의 선임
- 후보 : 심수옥 (초임)

이사 후보자

	성명	출생년월	추천인	주요 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김영환	1958. 2	이사회	現 인공지능연구원장 前 KT네트웍스 대표이사	없음	없음
사외이사	심수옥	1962. 1	이사회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 대학원 교수 前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실장, 부사장	없음	없음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409조 및 정관 제37조의 2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의 선임
- 후보 : 장재성 (초임)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출생년월	추천인	주요 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장재성	1970. 8	이사회	現 IBK투자증권 PE본부장 前 케이클라비스 대표이사	없음	없음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 388조 및 당사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7기(2020년도)의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1. 제36기 이사 보수 한도액 : 5,000백만원

제36기 이사 보수 집행액 : 2,031백만원

* 이사보수집행에는 종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제외함

2. 제37기 이사 보수 한도액 : 5,000백만원

*이사보수한도에는 종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제외함

제6호 의안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제안내용

정관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적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재임연수 산정에 대한 조항(6개월 이하의 경우 6개월, 6개월 초과시 1년 적용)은 사문화된 기준이며,

적용을 가정 시 연중 중도 입사한 임원의 경우 하루만 근무해도 6개월을 적용해야 하는 이슈가 있음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신규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임원인사관리규정 제40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임원인사관리규정 제40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임원인사관리규정 제42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연수는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재임연수에 대한 산정은 6개월 이하의 경우 6개월, 6개월 초과 시는 1년을 적용한다.	임원인사관리규정 제42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연수는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안내용

정관 제9조 및 상법 제542조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단위의 실질적 경영을 총괄하는 총괄CEO 역할의 중요성 및 광범위한 책임 범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제도(주식매수선택권)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가속화 및 가치 창출 달성,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여대상	㈜폴무원 이효율 총괄CEO
부여주식수	㈜폴무원 보통주 237,000주 최종 부여주식 수는 2023년 경영목표(NNR, CEBITDA, EV/EBITDA MULTIPLE) 달성에 따름
행사가액	15,000원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대비 높은 가액)
부여방법	자기주식(2020년 2월 19일 기준 849,700주 보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020년 3월 27일
	행사기간2024년 4월 1일 ~ 2027년 3월 27일
	행사기준(비중)NNR(30%), CEBITDA 달성율(30%), EV/EBITDA MULTIPLE(40%)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의 사유로 주가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액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